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

경상남도 세 정 과(☎055-221-3715)

함양군 재 무 과(☎055-960-4360)

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.

○ 지원대상

- (개 인)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
- (사업자)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등 직·간접 피해자

□ 지원내용

- 대상세목 : 과징금, 이행강제금, 부담금, 변상금

- 처분유예 : 1년 범위 내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

○ 신청접수

- 신청기한 : '21. 4월 ~ 6. 30.

- 신청서류 : 체납처분유예신청서, 체납처분유예 사유 증명서류

- 신청방법 : 함양군 재무과 방문·팩스·우편접수

<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7조(체납처분 유예) >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시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[※]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: 개별법령(105개 법률, 참고1 참조)에서 체납절차에 대해 지방행정제재· 부과금법(구 지방세외수입법)을 준용하고 있는 세목